

청주지방법원 2024. 4. 19 선고 2023가단8080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충북신용보증재단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원, 담당변호사 신인순

피 고 1. A

2. B

변 론 종 결 2024. 3. 22.

판 결 선 고 2024. 4. 19.

주 문

1. 피고 A는 원고에게 50,431,373원 및 그 중 35,345,593원에 대하여는 2023. 8. 4.부터, 14,870,881원에 대하여는 2023. 9. 11.부터 각 2023. 12. 11.까지는 연 8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피고 A와 피고 B 사이에 2023. 4. 11. 체결된 별지1. 기재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‘50,431,373원 및 그 중 35,345,593원에 대하여는 2023. 8. 4.부터, 14,870,881원에 대하여는 2023. 9. 11.부터, 각 2024. 3. 22.까지 연 8%의 비율로 계산한 돈’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3. 피고 B는 원고에게 50,431,373원 및 그 중 35,345,593원에 대하여는 2023. 8. 4.부터, 14,870,881원에 대하여는 2023. 9. 11.부터, 각 2024. 3. 22.까지는 연 8%의,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5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4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5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2. '변경된 청구이유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 법조 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(피고들 각 자백간주)

판사 김현룡

별지

1)로 보행위